

현대가정의 이혼실태와 제반문제

변 화 순

한국여성개발원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첫째, 이혼연구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둘째, 이혼의 인구학적 경향을 파악하고, 셋째, 이혼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1970년 결혼 23건에 1건이던 이혼이 1996년 현재 결혼 6건에 1건 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이혼부부가 경험하는 문제들은 크게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들로 나누어진다.

이혼 후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부부의 재산분할, 주택거주지 지정, 그 밖의 다른 재산, 앞으로 취득할 재산, 부양비, 위자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혼 그 자체 보다는 낮은 생활수준이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혼 후 겪는 어려움은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혹은 살림을 직접 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 한국사회는 이혼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다. 다만 저소득 모자가정 혹은 부자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정 받아 임대주택의 우선권 혹은 자녀교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은 더욱 힘들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잠정적 재산, 혹은 보상금부에 상당하는 제도를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형평상의 원칙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적 해석이 요구된다.

이혼자에게 있어 자녀교육은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직업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는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학령기에는 학교 교육을 돌봐 줄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에게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주로 어머니)의 주거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에서 일차 책임은 부모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도 아버지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어: 이혼율 • 긍정적 시각 • 부정적 시각 • 재산분할 • 주택거주지 지정 • 재산 • 부양비 • 위자료 • 주거사용권

1. 머릿말

1970년 결혼 23건에 1건이던 이혼이 1996년 현재 결혼 6건에 1건 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이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음을 결정하고 종래의 가족을 해체하여 남이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은 부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두가지로 양분된다(변화순, 1996c).

긍정적인 시각은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가 합리적인 삶을 찾음으로써 이혼이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다만 가족해체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은 해체 후 삶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며,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한 참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어머니가 참으면 가정의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싸움이 일상적으로 습관화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과 부모 중 한사람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중 어떤 삶이 자녀에게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가치의식이 강한 편이다. 가문의 유지가 가족원에게 있어서 지상의 가치이며 가장을 중심

으로 모든 의사가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것에 상반되는 개인의 주장이나 행복이 가족 유지에 반할 때 개인은 가족과 사회에서 배제되며 이를 이탈할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이 도입됨에 따라 가족집단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가족내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도 하나의 해결방법으로써 가능하다는 방향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개인이 우선인가 아니면 가족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건강한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가정이란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 및 가치관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생리적, 정신적으로 가족구성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변화순, 1996a)로 정의해 본다면 함께 살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함께 산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혼은 가족문제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간주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혼한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혼 남성, 여성,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들을 돕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이혼연구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둘째, 이혼의 인구학적 경향을 파악하고, 셋째, 이혼의 실태와

이혼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혼 연구의 동향

W. Goode의 「Women in Divorce」(1956)를 시작으로 서구에서는 사회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이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혼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주로 "개인들은 그들의 사회적·신체적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개념화, 정의, 상징화, 추구화, 가치화, 내면화 등을 통하여 주어진 객관적인 자극에 주관적으로 반응한다"고 보고 있다(Wesley R. Burr, Geoffrey K. Leigh, Randall D. Day et al, 1979).

한편 이혼을 상대방의 대한 기대의 괴리로 분석하면서 이혼에 대한 결정을 "손해"와 "이익"에 대한 경제적인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는 베커 등은 미래의 부부가 결혼에 대해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부부생활을 시작하면, 곧 상대방에 대해 실망(예를 들면, 성격의 차이, 수입의 적음, 건강, 성적인 문제, 역할담당 등)하게 되고, 기대에 어긋남으로 인하여 이혼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Becker, Landes and Michael, 1977).

이혼을 보는 연구자들의 시각은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 연구의 초기에 해당하는 1950~1960년대에는 이혼을 병리적 현상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을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Goode, 1956). 1970년대에는 이혼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위기로 보는 시각과(Hetherington, Cox and Cox, 1978) 이혼은 불행과 행복의 개념과 관계없이 불행한 결혼관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새로운 자기발견과 해방의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Weiss, 1975). 예를 들면 이혼한 여성들 중 독립적 생활에 잘 적응한 여성들은 오히려 자신감의 증가나 자긍심의 향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이혼 후 겪는 어려움, 갈등, 분노, 우울증 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혼과정과 그 후의 생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적응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Price & McKenry, 1988). 최근의 전반적 시각은 이혼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행한 결혼으로부터의 출구라는 필요악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그 불예측성, 사회화의 결여 등의 원인으로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듯 하다(Bursik, 1991).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의 중요성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Commaille, 1982; Pitrou, 1994). 특히 이혼 후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은 자녀들이므로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Théry, 1993).

이혼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60년대에 이혼 법, 제도상 여성이 경험하는 불리한 위치에 대해 연구한 것이 시작이다(이태

영, 1968). 이후 주로 이혼의 사회 인구학적 조사나 이혼 동향,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 요인 등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다루어졌다(최재석, 1982). 미시적 차원에서 이혼의 문제를 사적인 차원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혼 태도나 이혼의 원인, 이혼 결과를 다룬 연구물이 있다. 이들이 이혼을 보는 시각은 이혼은 비행청소년, 소년범죄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박현숙, 1980; 황옥자, 1980; 주소희, 1991). 이후 이혼을 개인적,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시대적,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사회현상으로 분석하고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변화순, 1987; 장현섭, 1994). 특히, 법적 측면에서는 재산분할권(이화숙, 1988)과 자녀양육의 관점(최진섭, 1993; 표계학, 1995; 변화순, 1996b)에서 다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최근에는 이혼에 관한 사례연구, 경험 연구를 통해 잘못된 결혼생활이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혼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여권론적 관점에서 이혼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곽배희, 1994; 김혜련,

1993; 장정순, 1994; 변화순, 1995). 또한 이혼 후 스트레스의 발생과 적응방안이 중요하다고 보는 연구가 사회사업의 차원에서 분석되고 있다(방선옥, 1992). 이러한 이혼의 관점을 남성, 여성,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법적, 사회적, 그리고 이혼 및 자녀양육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한 연구로는(변화순, 1996c)의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가 있다.

3. 이혼의 경향

가. 이혼의 추이

지난 20여년 동안의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계 수치로 비교해 볼때 1980년에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율이 0.6명에서 1995년에는 1.2명으로 급증하였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을 보면 1980년도에는 이혼이 23,150건으로 결혼 17쌍에 대해 이혼 1쌍꼴로 이루어진 반면 1995년에는 이혼이 53,872건으로 결혼 6쌍에 대해 1쌍꼴

표 1. 혼인 및 이혼수 분포

연도	이혼수	결혼수	인구1,000명당 이혼율(%)	결혼에 대한 이혼율
1980	23,150	400,471	0.6	5.8
1985	38,838	376,847	1.0	10.3
1990	44,608	402,911	1.0	11.1
1995	53,872	320,395	1.2	16.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1990년에 개정된 가족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던 여성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표 1>.

나. 동거기간별 이혼율

이혼자의 평균 동거기간 분포를 보면 1970년도 8.3년에서 1985년도에는 7.1년으로 점차 감소하였지만 이후 계속 증가해 1995년도에는 9.5년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세분화해 동거기간 별로 보면 5년 미만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1970년 40.9%에서 다소 감소하다 1980년 42.4%까지 올랐다. 이후 1995년도에는 31.3%로 감소하였다. 5-10년미만은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970년 28.5%에서 1985년 30.6%로 증가하나 1995년에는 24.8%로 감소하였다. 반면, 10-15년 대상자 분포는 비교적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나 15-20년 대상자는 1995년에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0년 이상의 경우도 9.1%로 증가해 최근의 이혼의 양상은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2>.

이상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일정한 연령층보다는 모든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있고, 그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1985년 이후 이혼을 증가, 여성의 이혼청구율 증가, 동거기간으로 볼 때 전 기간에 걸친 이혼을 확산, 이혼원인에 있어서 배우자 학대로 인한 청구율의 급증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 이후 그 현상은 매우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5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족관계 양상의 변화가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성의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여성이 자신과 재산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신혼기 이혼'이나 '황혼기 이혼'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혼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다. '신혼기 이혼'은 부부가 결혼초기에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일찌감치 헤어지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대부분 인생의 적절한 반려자가 될 배우자에 대해 깊이 파악해 보지 않고 외형적 조건을 중시하여 결혼했다가 파경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여년

표 2. 동거기간별 평균 이혼율

(단위: 년,%)

연도	평균 동거년수	0-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이상
1970	8.3	40.9	28.5	15.8	7.2	7.6
1975	8.1	39.2	31.8	15.4	7.2	6.4
1980	7.9	42.4	28.2	16.8	7.2	5.4
1985	7.1	41.5	30.6	15.7	7.4	4.7
1990	8.0	38.2	28.8	19.0	8.4	5.6
1995	9.5	31.3	24.8	20.8	14.0	9.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이상의 오랜 기간을 살아온 남보기에 매우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자식을 출가시키고 헤어지는 '황혼기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시집살이의 어려움, 남편의 몰이해, 외도 등으로 속이 상하면서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 수십년을 참아 온 부인이 자녀를 혼인시킨 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다. 황혼기 이혼은 부부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부부간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변화순, 1995).

다. 재판이혼의 원인

지난 1995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사건은 23,692건으로 1971년 4,322건에 비하면 무려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85년 부터 20,000건수가 넘어섰다. 여성의 이혼 청구비율은 1971

표 3. 재판상 이혼청구의 성별 사유

건수(%)

연도	재판이혼건수		부정행위	악의유기	학대 (본인)	학대 (존속)	생사불명	기타
1971	계	4,322 (100.0)	2,045 (47.3)	819 (18.9)	264 (6.1)	511 (11.8)	455 (10.5)	228 (5.3)
	남	(55.4)	(28.6)	(10.4)	(2.7)	(5.0)	(6.1)	(2.7)
	여	(44.6)	(18.7)	(8.6)	(3.4)	(6.8)	(4.5)	(2.6)
1975	계	5,943 (100.0)	2,798 (47.0)	1,246 (20.9)	424 (7.1)	576 (9.7)	629 (10.6)	270 (4.5)
	남	(48.5)	(23.4)	(10.8)	(2.5)	(3.1)	(6.0)	(2.6)
	여	(51.5)	(23.7)	(10.2)	(4.6)	(6.5)	(4.5)	(1.9)
1980	계	11,086 (100.0)	5,419 (48.9)	1,956 (17.6)	882 (8.0)	662 (6.0)	1,320 (11.9)	847 (7.6)
	남	(52.2)	(25.1)	(9.6)	(4.0)	(1.6)	(7.2)	(4.5)
	여	(47.8)	(23.8)	(7.8)	(4.0)	(4.4)	(4.7)	(3.1)
1985	계	21,652 (100.0)	10,393 (48.0)	4,373 (20.2)	967 (4.5)	2,747 (12.7)	1,741 (8.0)	1,431 (6.6)
	남	(48.4)	(25.3)	(11.0)	(1.4)	(2.4)	(4.5)	(3.7)
	여	(51.6)	(22.7)	(9.2)	(3.1)	(10.3)	(3.5)	(2.9)
1990	계	20,554 (100.0)	8,983 (43.7)	4,201 (20.4)	3,064 (14.9)	1,187 (5.8)	1,342 (6.5)	1,777 (8.6)
	남	(43.0)	(20.9)	(10.0)	(3.4)	(1.3)	(2.7)	(4.7)
	여	(57.0)	(22.8)	(10.4)	(11.5)	(4.5)	(3.8)	(4.0)
1995	계	23,692 (100.0)	9,982 (42.1)	4,026 (17.0)	4,875 (20.6)	1,429 (6.0)	1,679 (7.1)	1,701 (7.2)
	남	(44.8)	(22.4)	(8.7)	(4.5)	(2.6)	(3.0)	(3.5)
	여	(55.2)	(24.3)	(9.4)	(16.1)	(2.5)	(3.1)	(2.9)

자료: 법원 행정처 「사법연감」.

년 44.6%에서 1985년 51.6%로 다소 변화를 보인다. 7.0%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후 1990년 57.0%, 1995년에는 55.2%로 10.6%포인트 증가하였다. 이혼의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1980년 48.9%에서 1995년 42.1% 감소하였으며, 배우자나 존속으로부터 '본인이 부당한 학대를 받을 때'의 원인이 1971년 6.1%에서 1985년 4.5%까지 감소하였으나 1995년에는 20.6%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청구율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가정 폭력이 그만큼 급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참지 않고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1985년 (12.7%)을 기점으로 1995년 6.0%로 감소하였다. 그 외에 '배우자 악의의 유기'가 1971년 18.9%에서 1995년 17.0%로 '3년이상 생사불명'이 같은기간에 10.5%에서 7.2%로 그리고 앞의 이혼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5.3%에서 7.2%로 증가하였다<표 3>.

4.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이혼부부가 경험하는 문제들은 크게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의 문제들로 나누어진다.

가. 경제적 문제

1) 성(性)에 따른 차이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이혼 후 빈곤해진다는 연구가 있듯이 현실적으로 이혼에 따른 여성가장 가족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이다. 특히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은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킨다. 자녀가 없는 이혼 집단은 총 가구 소득을 평균화한 일반 모집단과 유사하지만, 자녀가 있는 이혼 집단의 소득은 평균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조사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입증한다(Eekelaar & Maclean, 1986).

이혼 후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부부의 재산분할, 주택거주지 지정, 그밖의 다른 재산, 앞으로 취득할 재산, 부양비, 위자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혼 그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다는 낮은 생활수준이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는 이혼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다. 다만 저소득 모자가정 혹은 부자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정받아 임대주택의 우선권 혹은 자녀교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으로 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은 더욱 힘들다. 이 때 건강의 악화는 여성의 빈곤화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상은 여성과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주거 및 생계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남성의 경우 사업상의 어려움, 혹은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의 감소, 생활의 불규칙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지출의 파다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혼 후 겪는 어려움은 절대적인 경제적 빈곤 문

제 보다는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혹은 살림을 직접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

2) 법적 방안

이혼시 부부의 재산분할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개정가족법에서는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은 나누어 가질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방법을 정한다. 주부가 가사노동에만 종사했다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분할받을 수 있다. 단,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음(민법 제839조의 23항)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아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판례에 의하면 결혼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최고 1/2까지 인정하고 있다. 부부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신설되었지만 부부 재산의 별산제로 인해 이혼 후 재산의 양도시 세금추정의 형평성 논란의 문제는 법개정에 따른 제반 조치의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Columbia 주와 Virgin Island주 등 42개주에서 부부 별산제(Separate Proper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데, 별산제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이화숙, 1988). 즉 재산의 정의가 재산의 귀속을 뜻하며 일방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분할할 수 없는 엄격한 common law를 적용하는 주와 정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부부의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형평법상의 분배(Equitable Distribution)를 적용하는 주로 나누어 진다. 후자는 각 배우자의 재산은 남편 혹은 부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되, 법정은 남은 다른 배우자(보통 부인이며, 총 재산의 약1/3정도를 차지한다)를 위한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동 재산의 경우, 결혼 후 획득된 재산(유산이나 선물은 제외하고)은 봉급 수령과 관련이 없이 양배우자에 의한 "소득"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재산은 공정하게 나누어지며, 부인이 1/2를 그리고 남편이 1/2를 가진다(Weitzman, 1985).

법률적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시 어려움이 많음을 인정한 미국의 여러 주 법원은 결혼후 취득한 재산의 분배를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보통 각 배우자의 재정적 자원들·각 배우자의 건강·결혼년수·배우자의 능력·배우자의 안정된 직업을 위해 훈련에 요구되는 시간·결혼생활시 부인의 일 그리고 나쁜 행위(간통)의 수행여부를 고려한다(Combs, 1979).

한편, 연금·교육 그리고 다른 경력과 같은 현재로서는 화폐로 계산될 수 없지만 장차 형성될 자산들의 분배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특정 직업유형은 자격증 취득에 있어 일정기간의 수련을 요하는데, 이때 이혼시 재산으로서의 평가는 낮지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연금수혜정도,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수혜 등이 현재 획득한 자산들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뉴프로퍼티(New property)라는 제도가 서구에서는 이혼시 재산과 채무는 평등하게 분리되는데, 고용 기회, 자녀 양육, 그리고 직업 준비에서의 평등성은 논

프랑스 민법에서는 이혼 후 발생하는 부부의 생활격차나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금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기준은 배우자의 연령, 건강상태, 자(子)의 양육기간, 직업상의 자격, 취직의 가능성, 재산상의 권리 등 구체적인 제조건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상금부의 지불방법은 일시불이 원칙이며, 능력이 불충분하면 연금형식으로 지불된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상금부 청구권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혼인생활기간, 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협력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부를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유책배우자에게도 보상금부청구권이 인정된다(Benebent, 1982). 이러한 보상금은 일종의 기여분적 성질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잠정적 재산, 혹은 보상금부에 상당하는 제도를 통일시킬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형평상의 원칙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적 해석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나. 심리적 갈등

1) 성에 따른 차이

이혼은 개인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혼 후 건강 상태가 증진되었다는 연구가 있으며(Spanier & Lachman, 1979),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 중 꽤 높은 비율(17-33%)이 그들의 이혼을 비교적 고통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이혼 결과로 단지 감정적인 혼란만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Albrecht, 1980).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혼은 가족 갈등의 스트레스

적인 상황을 해결하며 그리고 새로운 능력과 통제감, 보다 나은 관계,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높여 준다고 보고 있다(Brown 등등, 1976).

한경혜(1993)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어려웠던 문제는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밖에 여자들은 외로움, 자녀들 볼 시간 부족, 주변 사람의 부정적 인식 및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 등의 항목에서 평균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들은 평균 3.0(거의항상, 가끔)이 넘는 항목은 없으나 자녀들 볼 시간이 없음, 사회활동 참여 어려움, 외로운 느낌, 주변 사람의 부정적 인식, 자녀의 속썩임, 건강 문제의 항목에서 2.5-3.0사이의 평균(가끔걱정/문제)을 보이고 있어 남녀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혼을 경험한 여성과 남성이 직면하는 감정적 그리고 개인적 문제들은 유사한 반면, 반응 유형들은 다르다고 한다. 이혼의 결과로 인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무기력하며(Gove, 1973),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Price-Bonham 등등, 1982; Wallerstein, 1986; Zeiss 등등, 1980)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은 이혼후 초기에 감정적 문제들을 경험하는 반면, 여성들은 매우 장기간 동안 이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다(Hetherington 등등, 1978). 이런 차이들은 성과 관련되어 사회적 역할과 대처 유형의 사회화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며 그리고 경제적 문제와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성 역할 사회화 차이 때문에, 여성과 남성은 "여성의 이혼" 그리고 "남성의 이혼"을 경험한다.

만약 여성이 부인과 어머니 역할에 너

무 과도하게 집착하였다면, 그녀의 독립적이며 자립자족적 인간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많은 여성들이 이혼의 원인이 어디에 있건 자신이 잘못해서 혹은 팔자가 사나와서, 남편복이 없어서 이혼을 당했다는 자괴감 혹은 죄책감을 갖는다. 실제 수년 동안 남편에 의존해서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여성들은 이혼을 통해 남편을 상실하기 때문에 배신당했다는 생각과 그렇게 만든 원인자가 자신이라는 자괴감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혼 후 느끼는 감정은 분노와 용서의 양가감정, 고독감, 불행, 죽고싶은 감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혼 후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어떻게 이 과정을 벗어나는가에 따라 적응의 단계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에게 있어 자식의 의미는 자신보다 더한 존재이다. 이혼을 원하는 여성도 자식때문에 망설임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이혼 후 자녀와 별거생활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준다.

남성의 이혼 충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이 이혼은 남성들에게 정서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lbrecht 등, 1983; Weiss, 1975). 사실, 이혼한 남성은 이혼한 여성보다 감정적, 신체적 혼돈의 증상들을 더욱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 (Bloom & Caldwell, 1981; Gove, 1973; White & Bloom, 1981). 더욱이,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생활에 대해 더 의존적이므로 이혼 후 적응을 더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Bernard, 1972).

남성에게 있어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여

자들과 양상이 다르다. 특히 우리 사회는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삶은 매우 힘들며, 가족의 도움이 없이 해결하기 힘들다. 또한 가사문제를 남성 스스로 해결해야 할 현실 앞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가사로 인한 불편이 누적되다 보면 심리적 고통을 당하기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생리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성적 충격을 채워줄 기회는 많다. 그러나 매춘 등의 불안정한 성관계는 만족을 주지 못할 뿐더러 자괴감만 더해줄 수 있어 남성들의 성적 욕구의 문제도 심각하다 (변화순, 1995).

2) 대응방안

그러므로 어머니에게도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버이에게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의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버이(주로 어머니)의 주거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Seal, 1979). 이것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양육이 소유권이 없는 배우자에게 맡겨졌을 때 주거사용권을 인정한다 (Benebent, 1982). 즉 이혼 후의 주거문제는 그 주택이 이혼배우자 일방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경우에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둘째, 건물 소유자가 파탄이혼의 청구자인 때 법원은 배우자를 위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사회정책적으로 이혼 후 자녀양육 어버이와 자의 주거확보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정이다. 한국의 경우 주택은 거주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자녀양육 아버지의 주거사용권에 대한 논쟁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시 자녀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자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 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외국에서는 상담의 한 분야로써 이혼 상담에서 적응을 위한 치료적, 발달적 접근들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이것은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부, 분노, 그리고 디프레션 같이 내담자가 이혼의 감정적인 단계를 경험한 후 상실을 받아들이 수 있는 접근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밖에 Brown(1976)은 이혼의 결정 과정과 재구성 기간에 이혼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Fisher(1974)는 3개의 차별적인 기간을 이혼전, 법정 소송기간, 이혼 후로 나누었다. Levy & Joffe(1978)는 별거기간, 개인적(독신)기간, 재교섭기간(reconnection)을 강조하였다.

이혼 상담은 일반적으로 가족상담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4가지 면에서 결혼, 가족 상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첫째, 이혼 상담은 가족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둔다.
- 둘째, 이혼 상담은 가족해체와 관련해 가족기능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셋째, 이혼 상담은 적응을 넘어선 개인적 성장 증진에 목표를 둔다.

넷째, 이혼 상담은 이혼자들이 정신적 병리로부터 고통을 겪는 개인들이 아니라 위기에 처해있는 정상적인 사람됨임을 가정한다(Brown, 1976).

다. 자녀와의 관계

이혼자에게 있어 자녀교육은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직업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요하기 때문에 직장파 자녀교육을 양립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는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학령기에는 학교 교육을 돌봐줄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어머니가 자녀를 혼자 키우려면 심리적 갈등도 대단히 크다. 특히 아버지 없는 가정을 사춘기 자녀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앞서며 자녀가 항상 마음에 걸린다.

남자들에게 있어 자녀양육의 양상은 여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때 잔잔한 애정 문제보다는 양육비, 부모로서의 의무감 등이 더욱 앞선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는 여성들과는 달리 겉으로 심각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산다고 해도 직장파 양육을 병행하자면 역시 겪는 어려움은 크다. 그 중에서도 도시락을 싸는 일, 학부모회의에 남자들이 참여하기에는 어색한 점, 어머니처럼 자녀교육을 섬세하게 돌봐줄 수 없는 것을 남성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청소년 상담소가 활성화되어 자칫하면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소를 찾았지만 때로는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 답답할 때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상담소 종사자들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보겠다.

또한 학교의 급식 제공은 부자가정뿐만 아니라 모자가정을 위해서, 또한 균형잡힌 식단으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이다.

5. 맺는 글

통계적으로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혼연령도 일정한 연령층보다는 모든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그 원인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이것은 부부가 오래 살았다고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부부는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혼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이혼 예방을 위한 상담소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이미 이혼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혼 예방을 위해서는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에서 부부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예방적 차원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처리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하며, 일단 결혼을 한 부부가 당사자만이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호이해와 대화를

가능케할 수 있도록 가정상담소의 부부대화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족상담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 가정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중 사회복지기관/상담소는 우선 순위가 매우 낮음을 감안해 볼 때¹⁾ 접근 용이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자가 경험하는 문제에서 여성은 이혼으로 인한 빈곤화 경향,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남성에게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혼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기회의 확대, 아동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급식의 실시 등과 같은 자녀양육의 사회화 확대, 이혼 남성을 위한 상담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영구주택 입주권 확대, 공적부조의 확대 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혼후 적응단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확산과 상담기관에서의 이혼자 적응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1) 상담소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윤영숙, 최은영, 1991:102)에 의하면 '이웃/친구'라고 보는 실무자가 39.1%, 그 다음이 '친척'(29.1%)과 종교지도자'(8.6%)이며, 네 번째가 '사회복지기관'(7.3%)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보는 실무자도 5.0%나 되었다.

참고문헌

- 곽배희, 1994 c,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김순옥, 1993, 이혼대책에 관한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 서출판 하우.
- 변화순, 1995, 가족해체와 재구성 여성한국사회 연구회(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 연구소
- _____, 1996b,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권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정신 건강연구], 제15권.
- _____, 1996c,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윤영숙, 최은영, 1991, 가족상담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화숙, 1988,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 최진섭, 1993, 이혼과 자녀, 삼지원.
- 표계학, 1995,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자의 부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인하대학교
- 한경혜, 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 가족학 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 Ambrose, P., Harper J. & Pemberton, R., 1983, *Surviving Divorce: Men Beyond Marriage*, Sussex: A Member of the Harvester Press Group
- Backer, G. S., Landes, E. M. & Michael, R. T., 1977,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 61.
- Bourguignon, O. Rallu, J. L. & Théry, I., 1985, *Du Divorce et Des Enfant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Byun, W. S., 1987, *Une Etude Comparative sur la Famille et le Divorce en France et en Corée du Sud*, Paris: Université Paris-V, Une these pour la doctorat(박사학위청구 논문).
- Chiriboga, D. A. & Carton L. S., 1991 *Divorce: Crisis, challenge of relief*,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Commaille, J., 1982, *Familles Sans Justice*, Paris: le Centurion.
- Cornu, G., 1976, *La Reforme du Divorce*, Paris: Les Cours de Droit.
- Finch, J. and Mason, J., 1993, *Negotiating Family Responsibilities*, London and New York: Tavistock/Routledge.
- Fulchiron, H., 1985, *Autorité Parentale et Parents Désunis*, Centre Régional de Publication Lyon, Centre National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 Goode W., 1956, *Women in Divorce*,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Hirsch, B. B., 1973, *Divorce, What a woman needs to know*,

-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 Maclean, M., 1991, *Surviving Divorce*, Women in Society, A Feminist List(ed. by) Jo Campling, Houndmills Macmillan Education Ltd.
- Parkinson, L. 1987, *Separation, Divorce and Families*, London: Macmillan Education.
- Pitrou, A., 1994, *Les Politiques Familiales, Approches Sociologiques*, Paris: Syros.
- Price, S. J. and Mckenry P. C., 1988, *Divorce*, Newbury Park: Sage.
- Théry, I. 1993, *Le Démariage*, Paris: Editions Odile Jacob.
- Volgy, S. S.(ed) 1991, *Women and Divorce/Men and Divorce, Gender Difference in Separation, Divorce and Remarriage*, New York, London: The Haworth Press.
- Weitzman, L. J., 1985, *The Divorce Revolution: The Unexpected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Women and Children in America*, New York: The Free Press.
- Weyl, M. et R., 1975, *Divorce: Libéralisme ou liberté*, Paris Editions Sociales.

The actual conditions of divorce and it's problems in Korea

Hwa-Soon B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irst, the study about divorce in the world, second, the tendency of the divorce rate, third, the problems faced by men and women after divorce, and its countermeasures.

The divorce rate has increased in Korea since 1970. It has changed from one divorce in 23 marriages in 1970 to one divorce in 6 marriages in 1996. It is estimated that the divorce rate will increase in the future.

People face economic, affective, social relations, and family problems after divorce. Economic problems include issues related to the separation of property, custody of children, and the alimony. Women tend to suffer more from economic problems, whereas men suffer more from the effective problems.

For the low income class, it is rather the economic difficulty that makes them worse off in adapting to the family dissolution. In Korea, we don't hav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divorced families, but low income people can benefit from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and Mother-Child Welfare Law which gives the priority of the lent house, or the educational fee.

Children's education for the divorced people is a very serious problems in Korea, lacking social service programs for childcare of the single pare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ke the social policy for rearing children not only for mothers but also for fathers.

Key words: Divore • tivorce rate • problems • Livelihord Protection Low
• Mother-Child • Walfare Law

토론 : 이혼에 대한 시각과 이혼을 해석방법의 재고

정 현 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이혼이 점차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혼의 실태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고하기 위해서 3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이혼을 보는 시각

변화순 박사의 '현대사회의 이혼 실태와 재반문제'에 대한 논문에서 지적한 대로 '이혼을 가족 문제를 해결방안으로 간주' 한다면 필자의 논의대로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불행한 결혼을 청산하는 것이 문제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재혼도 결혼생활의 대안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혼이 해결한 가족문제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이혼이 부부와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과 정책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혼에 관해서 긍

정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혼이 아동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해석문제이다. 우리나라보다도 이혼이 더 보편적이고 사회적 편견이 적은 미국이나 영국에서조차 이혼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Wallerstein과 Blakeslee (1989)의 10년이상의 종단적 연구와 챔임브리지 대학의 Richard(1995)의 37년간의 종단적 연구(조선일보, 1995, 5, 5)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인식한 것보다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 만성적인 무기력, 우울증, 자신감 결여 등의 심리적 문제를 나타낼 뿐 아니라 조기 결혼, 낮은 진학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단기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에서 이혼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한 논문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후 아동이나 부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부모의 이혼 자체

보다는 이혼에 이르는 과정이나 이혼의 후유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혼 이후의 애정 결핍과 상실감, 소외감, 이혼 이후 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부모의 정서적 상태 등이 적응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현숙, 1993).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독립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혼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에서도 '싸우는 부모밑에 있는 것보다 갈라서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좋다고' 주장도 고아원 아동의 74%가 부모가 살아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최소한 반쪽의 행복이 가능하도록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해준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한겨레, 1996년 12월 6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혼 후 아동의 문제는 재혼과의 연계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6년 가정법률상담소의 재혼에 대한 심포지엄 결과를 보면 남자의 경우 재혼 1년 미만에 다시 이혼하는 사람이 17% 이상이며, 미국의 경우도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혼을 보는 관점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네소타 대학의 Doherty(1995) 박사와 같이 상습적인 아내 구타와 가정 폭력과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불행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이혼 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충고(조선일보, 1995.5.3)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제3자들이 쉽게 낭만적 긍정론을 지지하기에 앞서 이혼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혼후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혼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현대와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가족적 특징을 나타내는 데는 전체 인구의 90%가 가톨릭교도인 점도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유럽국가들이 사회의 변화에 맞게 가족관련 정책을 변화시킨데 반해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가족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화용, 유계숙, 전영주, 정현숙, 1997). 특히 법적용 별거기간을 길게 둔다든지, 이혼의 비용이 매우 많이 들게 하는 등의 정책적 측면이 낮은 이혼율을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2 이혼의 증가에 대한 견해

많은 연구 보고서들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결혼과 가족과 관련된 인구통계의 특징은 만혼현상과 낮은 출산율,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특징이다. 따라서 변화순 박사의 논문<표 1>에서 지적한 1990년의 결혼에 대한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혼율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이므로 1985년대와 1990년대의 결혼대 이혼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5년대의 결혼에 대한 이혼율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혼수에 그 근거가 있다. 즉, 최근의 만혼현상

과 결혼율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이혼은 결혼 후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사건으로 한 해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이혼대 결혼의 비로 이혼율을 계산할 때와 결과는 계산하는 해의 결혼율에 따라 다르다. 또한 약 10%의 결혼이 재혼 임을 감안한다면(재혼의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 이혼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조이혼율은 1992년 8.6에서 1994년 8.2, 1995년에는 7.1로 감소하였다. 비록 조 이혼율은 출생률에 영향을 받아 실제보다 과소평가 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이혼율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절대적인 이혼수는 1980년도에 약 2만 3천건에서 1995년 5만 3천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별 이혼율을 볼 때 1994년의 이혼별 연령은 30대가 51%, 40대가 26%, 20대가 13.7%로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혼율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1990년 이후에는 어느정도 고원현상이나 감소현상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재판이혼과 합의이혼의 차이분석

1995년 전체 이혼건수 53,872건중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23,692건을 빼 나

머지를 합의이혼으로 본다면 재판이혼과 합의이혼의 비율은 44:56으로 아직은 합의 이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변화순 박사의 논문<표 4>에서 제시한 재판이혼의 사유는 부정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합의이혼의 경우는 '기타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부간의 성격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기한 사항은 1996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재판이혼의 원인 중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재산 분할청구의 경우 1991년 42건(6,765건 중), 1994년 541건(8,071건 중)으로 수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1994년에는 약 7%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가액은 1993년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3천만원 이하가 340건, 3천-1억이 96건, 1억이상이 13건으로 저소득층에서의 재산 분할싸움이 더 빈번함을 알 수 있다.

1996년 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이혼 사유는 '기타 사유'가 가장 많다. 남자의 경우는 거짓말, 성격차, 경제갈등이 지적되었으며, 여자는 경제갈등, 대화단절, 불성실-무책임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재판이혼과 합의 이혼에 따라 이혼원인이 차이가 있으며, 상담사례에서 나온 이혼원인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혼과 관련된 정보들은 자료가 공개되는 재판이혼에만 집중되어 이혼으로 인한 부부간의 재산 싸움이나 자녀 양육에서의 문제들이 실제보다는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판이혼과

합의이혼은 이혼사유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며, 재판이혼의 과정이 부부들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혼 이후의 경험은 재판이혼과 합의 이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이혼과 합의 이혼에 따른 이혼후의 경험을 재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Wallerstein, J. & Blakeslee, S
(1989), Second chances :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
Ticknor & Fields.
- 사법연감 (1993, 1996)
- 신화용, 유계숙, 전영주, 정현숙
(1997). 세계의 가족. 서울 : 예지각
- 정현숙 (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
59-75
- 통계청 (1996) 세계와 한국
- 한겨레(1996년 12월 6일) '법도 아
이를 버렸다.' '작년 10만쌍 이혼
신청, 20만 아이상처받은 셈'
- 조선일보(1995년 5월 5일) 이원복
만화칼럼, '이혼'

토론 : 현대가정의 이혼실태와 제반문제에 대한 토론

유 가 효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즉 이혼한 부모와 떨어져서 할머니와 살던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나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고 또한 이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이혼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개인 및 사회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차에 인간발달학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선정,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혼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시고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린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의 기본 입장은 이혼을 부부갈등의 불가피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이혼 이후에 당사자 및 자녀의 적응을 돕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발표자는 이혼실태를 다루어 1980년 이후 1995년 까지의 이혼율의 추이 및 동거기간별 이혼율의 제시

를 통해 이혼율의 증가와 전 연령층에 걸친 이혼의 확산을 밝히고 있고 이혼의 원인은 재판이혼의 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로 기술하고 있다. 재판이혼의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그 비율은 근래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고 '배우자나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학대를 받을 때'의 비율이 90년 이래로 크게 증가했음을 제시하였다.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이혼한 당사자인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가족문제, 대인관계의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서는 이혼예방을 위해 미혼자의 혼인준비 교육 및 기혼자를 위한 부부대화교육의 필요성과 상담소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혼자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이혼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변화, 취업교육기회확대, 자녀양육의 사회화확대, 공적 부조 확대, 주거안정책, 상담기관에서의 이혼자 적응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몇가지 부연하고 싶은 점이나 의문점을 제시함으로써 본 토론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의 이혼문제를 보는 기본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혼이 이제 더 이상 금기시되거나 예외적인 사회병리적 현상으로만 치부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또한 개인의 생활주기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편모, 편부, 또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소년소녀가족, 재혼가정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에서 발표자와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표자는 최근에 들어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여성의 자녀양육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됨으로써 여성이 이혼후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감소된 사회적 여건 때문이라고 해석하셨는데 이에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이러한 이혼을 제약하던 외적인 조건이 완화된 것 이외에도 결혼관계 자체의 변화 양상, 즉 결혼관계내적 측면에서 볼 때 이혼에 이르게 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부부갈등의 심층적인 양상에 대한 언급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따른 전통규범 및 새로운 규범의 충돌 내지 무규범상태와 더불어 물질주의와 결합한 아전인수식 편의주의가 작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부부윤리가 정립되지 않아, 남녀간의 결혼에 대한 상호기대 및 이해의 차이가 최근의 결혼갈등으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발표자께서는 이혼의 원인에 대해 주로 재판이혼의 원인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배

우자의 외도로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사유로 청구한 비율이 비등하게 나타났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아내의 외도가 남편의 경우만큼 증가했다고 보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규범으로 인해 남편의 경우는 아내의 외도가 드러나면 곧 이혼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거듭되는 외도를 참다 못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것 또한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너무 일면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아내의 외도가 남편의 외도에 대한 반발심리에서이든, 사회적 분위기에서이든, 또 다른 이유에서이든 늘고 있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상담기관에 접수되는 상담건수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재판이혼의 원인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당행위로서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발표자는 이를 가정폭력이 늘어났고 또한 이를 참지 않고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후자에는 동의하지만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이 늘어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여자와 복어는 사흘드리 때려야 맛이 난다'는 속언이 있어 왔던 만큼 가정폭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전통적 가부장적 관념으로 맞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참아내거나 집밖으로 문제를 드러내던 것을 꺼리던 것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여론에 힘입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했다고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및 최근에 들어 '여성의 전화' 등 매맞는

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혼의 원인으로 재판이혼에서 거론되는 사유와 협의이혼의 사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는 주로 재판 기록에서 드러나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전체 이혼, 가운데 협의 이혼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음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혼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파악할 수 없고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연구도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편이어서 전반적인 이혼원인을 알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발표자는 협의이혼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하고 협의이혼의 사유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 사유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서 그럴 수 있으리라고 짐작은 되지만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포함된 것으로서 토론자의 견해로는 이혼사유로서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부갈등이나 혼수문제, 부부간 성격차이로 언급되어지는 성장배경의 차이, 성적 불만, 남녀간 역할기대의 차이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젊은 부부들의 이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규범과 서구적인 평등주의적 규범의 갈등의 와중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

하고 또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과정에서나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미성숙한 성인자녀들이 많음을 생각해 볼 때 무책임한 결혼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혼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서 미혼남녀의 결혼준비교육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발표자는 이혼을 가능한 하나의 대안으로 보는 입장과 일치하여 이혼과 더불어 이혼당사자가 적응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제반문제들을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가족문제, 대인관계의 문제로 나누어 다루었는데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본다.

이혼에 따르는 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자녀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에 따르는 자녀 문제는 서구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부계혈통계승의 중요시, 혈연으로 이어진 자녀에 대한 집착,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여성의 재혼의 어려움, 떨어져 사는 이혼한 부모와의 접촉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등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이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와 별거하게 되면 자녀를 쉽사리 만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과 자책감을,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게 되면 경제적 곤란과 양육의 부담 및 재혼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이룩하는 가정에서 계부모자녀관계 역시 전통적인 편견과 관련하여 더욱 어려운 양상을 띄게 된다. 따라서 가족법 개정으로 이혼한 여성이 자녀양육권을 법적으로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개선되고 의식

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혼한 여성 및 자녀의 복지는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근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이혼 후 부모 어느 쪽이든 자녀를 맡으려 하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아아닌 고아로서 고아원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다가도 재혼과 더불어 새로운 가족관계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따로 하숙을 시키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지나치게 혈연만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가족의 성격이 이러한 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한 가족과 자녀에 대한 복지대책 및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것 이외에도 이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비전형적인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개방적인 의식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을 전향적으로 가진다 하더라도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소홀히 될 수 없을 것이다. 미혼남녀에 대한 결혼전 사회화과정으로서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 및 현명한 배우자선택 및 파악능력기르기, 결혼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능력갖기, 평등하고 상호존중하는 관계맺기,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능력 키우기 등의 결혼준비교육이 대학의 교양과정을 통해서나 일반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송인숙, 유안진(1994). 전래동화와 대학생의 편견형성판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2권 1호, 1-10
- 곽배희(1994).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김정옥(1993). 이혼의 사회적 배경과 이혼원인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15-40
- 박혜인, 주성(1997). 대구지역 이혼상담 사례에 대한 실태분석,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제 23집, 11-24
- 변화순(1997).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7년 여름호, 75-96.
- 임춘희, 정옥분(1997). 초혼지모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5호, 73-102
- 정현숙(1993). 이혼과 가족문제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105-104
- 한경혜(1993). 한국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79-104